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도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분실·도난 외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② ~ ⑤ (생략)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① -----

1. -----수출자: -----

 2. -----수출자: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재검토기한) -----
----- 2023
년 -----

○ 띄어쓰기 수정

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관할세관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김포공항세관, 부평지원센터의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천안세관, 구로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충주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진해지원센터, 사천지원센터, 통영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온산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대전세관, 완도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 대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부칙 <제2022-00호(2022.0.00.)>

이 고시는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관할세관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김포공항세관, 부평지원센터의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천안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대관세관, 구로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충주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 대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진해지원센터, 사천지원센터, 통영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온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완도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관할세관 조정 반영